

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9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2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4. 2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5. 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주민생활과장 정영량)

가. 개정이유

- 법제처 권고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개정
(안 제22조제1항)
 - (현행) 군수 또는 센터
 - (개정) 군수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
- 2) 예산조치: 2026년 당초 예산 편성 완료
- 3)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7962(2026. 2. 19.)호]
- 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435호

- 예고기간: 2026. 2. 25.~2026. 3. 17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22조제1항)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주체를 “군수 또는 센터”에서 “군수”로 일원화한 사항으로,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운영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함.

나.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주체를 명확히 정비하여 제도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제도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